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446호 2014. 9. 17.(수)**

선 결	기관 의 장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4-103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2
- 거창군 고시 제2014-104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3
- 거창군 고시 제2014-105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1-6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4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4-762호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6

회 람									
--------	--	--	--	--	--	--	--	--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16일

### 거창군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사과나무 재배)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면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72번지 외 1필지	167,638	4,981	4,820	농지 조성	60,005	2013.06.10 ~ 2014.05.31	2013.06.10 ~ 2014.12.31	거창군 고제면 원봉계길 70-39	이상화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4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16일

### 거창군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사과나무 재배)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72번지 외 1필지	71,052	4,953	4,846	농지 조성	45,000	2014.01.10 ~ 2014.12.31	거창군 고제면 원봉계길 149-2	하두식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4 )

##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1-6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1-6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도시건축과(☎ 055-940-358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 9. 16.

# 거 창 군 수

### 1. 거창군계획시설 (교통시설:도로)결정 조서

####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면 적 (㎡)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68	10	집산 도로	447.0	남상면 월평리 2366	남상면 월평리 2280	-	-	-	-

#### 나) 도로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도 로	○ 도로신설 - 연장(L) : 447.0m - 폭원(B) : 10.0m	○ 산업단지 연결도로(자동차전용) 개설로 인해 기존 농경지 진입로 단절로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95번지 일원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시행하는 거창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도로를 확장·개설하여 농어민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함.

### 2.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비 고
	리	지번					
계				<b>29,697.1</b>	<b>4,953.5</b>		
1	월평	2295	답	265.2	265.2	경상남도	
2	월평	2294	답	1,769.5	1223.0	김동헌	
3	월평	2292	답	1,461.0	157.0	정문석	
4	월평	2291	답	1,975.1	122.0	정영석	
5	월평	2290	답	1,942.9	118.0	이춘식	
6	월평	2288	답	1,028.8	135.0	정수석	
7	월평	2368	구	1,283.2	412.0	농림축산식품부	
8	월평	2366	구	2,335.2	296.0	농림축산식품부	
9	월평	2287	답	1,832.0	119.0	정문석	
10	월평	2286	구	4,242.0	224.0	정은석	
11	월평	2285	답	1,918.3	110.0	정수팔 외1인	
12	월평	2282	답	1,134.1	118.0	정순구	
13	월평	2281	답	1,241.0	117.0	정종석	
14	월평	2280	답	1,036.2	233.0	김동률	
15	월평	2367	도	490.3	490.3	농림축산식품부	
16	월평	2299	답	570.5	293.0	이형곤	
17	월평	2300	답	1685.1	164.0	정한석	
18	월평	2298	답	1928.8	77.0	경상남도	
19	월평	2301	답	730.7	246.0	정연술	
20	월평	2369	도	827.2	34.0	농림축산식품부	

### 3.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도로)결정도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도로) 결정으로 지형도면 고시에 같음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따  
로이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 가.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고자 함.
  - ※ 지역연대 의의: 아동·여성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경찰, 의료기관, 폭력예방시설 및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안 총칙 제1조 ~ 7조)
- 나.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장 제8조 ~ 15조)
  - 1)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위원의 해촉,간사
  - 2) 사례관리팀의 구성, 업무
- 다.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안 제3장 제16조 ~ 19조)
  - 1) 협력체계의 구축
  - 2) 위기관리, 예방지원, 연구 및 조사
- 라. 회의 운영(안 제4장 제20조 ~ 24조)
  - 1) 위원회 운영, 안건

- 2) 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 3) 사례관리팀 회의운영
- 4) 회의기록과 보고

마. 행정사항(안 제5장 제25조 ~ 28조)

- 1) 사업비의 지원
- 2) 비밀 준수의 의무
- 3) 필요경비 또는 수당
- 4) 시행규칙

###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940-3089], 전화[940-3151] 또는 E-mail [leejh324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부.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일자	2014. 9.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실장

## 1.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아동·여성안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연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 )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성실히 이행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

### 다.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 16조)

- 지역사회안정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기능을 수행
  - 지역연대 운영 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라. 예방지원( 안 제 18조)

-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기능을 수행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9 . ~ .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성희롱, 실종,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연대"란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말한다.
5.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란 아동 보호,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아동·여성폭력 예방·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안

전망 구축을 위하여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7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2장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거창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관련 담당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학계전문가
10.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5조 제2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추측 해체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에서 해촉 의결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여성아동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의 팀장, 간사 내지 실무전문가 중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②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 ③ 사례관리팀원은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 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제19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 제4장 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1회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안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전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전
3.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전

**제22조(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3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4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위원회 회의 및 사례관리팀 회의의 일지는 간사가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④ 지역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전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을 경우 그 회의 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제5장 행정사항

**제2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